

## 1 제공 대상
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
-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

## 2 신청방법(입사지원서 접수 시 2022.09.30.(금) ~ 2022.10.14.(금) 오후 17시까지)

- ① 입사지원서 접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해당사항 확인
- ②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본인이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 체크 및 증빙서류 제출 (ex. ■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, □ 면접시간 1.5배 연장)
- ③ 증빙서류와 편의지원 사항 일치 확인 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전형 편의제공 가능여부 게시
- ④ 면접전형 편의지원 결과 안내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예정

## 3 유의사항

-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(2p)에서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,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시험시간 연장 항목은 일반직(장애인) 제한경쟁 시험에만 적용됩니다.
- 의사진단서는 「의료법」 제2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('22.10.14.)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.
- ※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[www.hira.or.kr](http://www.hira.or.kr))의 [병원·약국 찾기]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,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-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
  - ① 장애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
    - ※ 시각장애의 경우,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
  -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
  -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    -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하는 항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

- 입사지원서 작성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
- 편의지원 신청 당시 장애정도와 응시예정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의 장애정도가 다를 시에는 편의지원 제공 내역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#### 4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

##### ○ 면접전형

| 장애 유형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편의지원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증빙서류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지체장애  | 장애정도가 심한 자 /<br>심하지 않은 자 | ·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증명서           |
| 뇌병변장애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<br>·면접시간 1.5배 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증명서,<br>의사진단서 |
| 시각장애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증명서           |
| 청각장애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<br>·필답면접 제공<br>·의사전달보조요원 지원<br>·보조공학기기 착용 허용<br>·면접시간 1.5배 연장 | 장애인증명서,<br>의사진단서 |

※ 면접시간 1.5배 연장은 종합병원 의사진단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제공여부를 결정하므로 진단서 원본 제출 필요(종합병원 이상)